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52423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

피 고 1. B(개명전 : C)

2. D

변 론 종 결 2022. 12. 6.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9,211,646원 및 그 중 7,999,741원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그 중 7,848,508원에 대하여 202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1. 체결된 증여계약은 19,211,646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D는 원고에게 19,211,6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21. 5.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친인 피고 D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는 2021.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49,500,000원, 채무자 피고 B)을 2021. 9. 10. 말소하고, 2021. 9. 8.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52,800,000원, 채무자 피고 D)을 설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카드이지론대출채권은 2020. 1.경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또한,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 B이 보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와 체결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새로이 채무자 피고 D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대상이 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022. 8. 9. 기준으로 19,211,646원이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한다고 보이므로, 취소의 범위는 위 19,211,646원이 된다.

(4)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는, 원고가 2021. 5. 21.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2022. 8. 1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9,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2.경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5. 2.경 피고 B의 명의로 매수한 것을 피고 D의 명의로 회복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선의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 D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선의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다는 취지의 피고 D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9,211,6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용카드 회사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회원의 지위에 있는 자, 피고 D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입니다.

2. 사안의 경위

가. 피고 B의 신용카드 이용 및 이용대금의 연체

(1)피고 B는 원고와 원고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종 거래(물품 및 용역대금의 일시불 구매, 할부구입, 현금서비스 등)를 하고, 원고와 계약체결시 기재한 결제은행의 예금계좌로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신용카드 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또한 별도의 서류작성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이지론 등의 각종 대출서비스(에스엔에스, 인터넷대출, 자동화기기 등)를 통하여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약정하였으며, 위 약관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였고, 또한 이자율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그러나 피고 B은 2019. 12. 30. A 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서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기 시작하여 2021. 1.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한 물론 2020. 1. 23.에는 1,000만원의 카드이론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2. 8. 9. 기준으로 연체중인 대금은 금19,211,646원에 이르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특수채권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피고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피고 B이 2022. 2. 16. 기준으로 연체하고 있는 이용대금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피고 B은 해당 연체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준일자 2022. 8. 9., 단위:원,%)

구분	이용 일자	대출 번호	미회수원금	편입전 잔액	편입후 연체이자	미회수 가치금 금	총합계액	연체 이율	비고
신용 구대	2020. 1.경		7,999,741	880,354	957,325		9,847,421	20.00	
카드 론	2020. 1.23.	F	7,848,508	739,457	762,423	13,837	9,364,225	15.90	
합계			15,848,249	1,619,811	1,729,749	13,837	19,211,646		

1) 최초 가입신청일자는 2018. 9. 17.이며, 2019. 12. 30.에 피고 B이 원고 장구를 방문하여 다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신용카드가 발급된 것입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김제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김제시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8층 아파트

1층 268.984㎡

2층 266.684㎡

3층 266.684㎡

4층 266.684㎡

5층 266.684㎡

6층 266.684㎡

7층 266.684㎡

8층 266.684㎡

9층 266.684㎡

10층 266.684㎡

11층 266.684㎡

12층 266.684㎡

13층 266.684㎡

14층 266.684㎡

15층 266.684㎡

16층 266.684㎡

17층 266.684㎡

18층 266.684㎡

지층 249.77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전라북도 김제시 대 31263㎡

2. 전라북도 김제시 대 2068㎡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49.896㎡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33331분의 24.012

2. 소유권대지권 33331분의 24.012

-끝-

